



#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알림

1. 관련 : 교원복지연수과-2057(2013. 6. 5.)

2.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, 2013. 3월부터 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을 지급 중단한 바 있습니다.

3. 그리고 교원에 대하여는 위 관련호로 교원연구비 보전계획을 통보하였고,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시·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이 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수신자 시도교육청

서기관

변흔갑

지방교육자치과장 김태형

지방교육지원국장

전결 10/23  
정병걸

협조자

시행 지방교육자치과-4811 ( 2013.10.23. ) 접수 기획조정관-7631 ( 2013.10.24. )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

/www.moe.go.kr

전화 02-2100-6348

/전송 02-2100-6687

/ bhk111@moe.go.kr

/ 공개

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

##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

### □ 추진 배경 및 경과

-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('12. 8. 23.)
-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 지급 중단 ('13. 3월)
- 중학교 교원에 대한 임시 보전방안 시·도교육청 통보('13. 6. 5.)
  -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시·도 교육규칙(학교회계) 개정을 통해 보전
  -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 마련 예정

### □ 보전 필요성

- 학교 행정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기진작 및 교원과의 형평성 도모
  - 행정실의 업무량과 책임도 및 곤란도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
  - \* 방과후교육활동·저소득층 지원사업·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 정책 및 수익 자부담 사업 확대, 비정규직 관리업무 증가 등
- 일반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균형성 유지 차원의 처우개선
  - 읍·면·동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
- 전국 시·도교육감협의회의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건의('13. 7월)
  -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

## □ 보전 방안

-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은 연금재정 및 타 직종 파급 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
- 이에 시·도 교육규칙(학교회계) 개정 추진

### ○ (보전 방법) 시·도 교육규칙(학교회계) 개정

- 시·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(학교회계)을 개정하여 지급 근거 마련
- (예시)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학교회계 기준경비에 '직원 교육지원활동비' 추가

### ○ (보전 대상) 중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 지방공무원

### ○ (보전 수준) '13. 3월부터 종전 지급액 수준으로 소급 지급

## □ 시·도교육청 협조

- 시·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(학교회계) 개정
- 자체 재원 확보 및 수당 지급